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 선고 2020가단61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5. 26.

판 결 선 고 2021. 6. 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,739,726원 및 그 중 1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2. 22.부터 2020. 2. 1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, 피고 C 주식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, 피고 D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,739,726원¹⁾ 및 그 중 지급보험금 1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2. 2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. 2. 15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D은,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재판진행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, 피고 D이 2019. 8. 14. 부산지방법원 2019하단933, 2019하면93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. 11. 19.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나 2021. 3. 3. 피고 D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2021. 3. 17.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,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나리

별지

1) 지급보험금 150,000,000원 +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. 12. 21.까지의 지연손해금

739,726원 = 150,739,726원